

# <2025년 회계사 1차 시험 대비 국세기본법 법률 개정사항>

※ 2024. 12. 10. 국회 통과로 개정이 확정된 법률 개정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4. 12. 24. 현재 입법예고 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세법 공개강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1장-11 하7

- ② 납세자가 **3회 개정** 연속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으면** 기한이 정해진 서류는 해당 기한 다음날에, 이외의 서류는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개정**의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2. 3장-5 하6

- \*1. 위 (1)과 (2)에서 규정한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체적기간은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①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3-1
  -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개정**

## 3. 4장-1 하8

**세부사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관련 사항

- 1.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 ① 민법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개정**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 ②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 제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개정**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의 비율

## 4. 4장-5 상3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국세의 <b>납세의무 성립일</b> 현재
	① 무한책임사원 <sup>*1</sup> , ② 과점주주 <sup>*2,*3</sup> , ③ <b>과점조합원 개정</b>

## 5. 6장-3 상1

- b.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개정** 또는 환급세액(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6. 6장-3 상8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 표준 및 세액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b>개정</b>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
----------------------------	---

## 7. 6장-13 하2

- ②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 **개정** 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8. 8장-3 하11

- ①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sup>\*1</sup> **개정**에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부분조사인 경우 그 범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전으로 한다. **개정**

\*2.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 8. 8장-10 하3

- ③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 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개정**